

평창군 옥외광고물등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75

제출년월일: 2002. 12.
제 출 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 옥외광고물관리법, 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 및 강원도옥외광고물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안 제2조)
- 나. 평창군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구성(안 제3조)
- 다. 광고물안전도 검사업무의 위탁운영(안 제5조내지 제7조)
- 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및 위탁(안 제11조내지 12조)
- 마. 광고물 허가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징수(안 제13조내지 1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발췌붙임
- 나. 예산조치 : 조례제정후 조치
- 다. 관계부처승인 : 행정자치부 표준안 시달
- 라. 입법예고 : 의견내용 없음
- 마. 신·구조문대조표 : 제정안으로 해당없음

평창군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강원도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군수는 영 제7조 및 영 제9조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군수는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이 경우 영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포함한다)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광고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영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창군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 규정에 의한 공무원인 위원은 업무비중을 감안하여 당연직으로 정할 수 있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디자인 등 옥외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3. 기타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하로 구성한다

③영 제33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평창군 광고물관리 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지역도시과장으로 한다.
2.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3인 내지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

원수의 과반수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된다.

4. 소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영 제34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심의사항등) ①영 제34조 제1항 제2호 및 본 조례 제3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령규정에 의한 사항과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거쳐야 하는사항
2. 도시계획법상 미관지구 및 경관지구안의 높이 4미터이상인 광고물의 표시허가·신고에 관한사항
3. 표시면적 4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으로써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수가 옥외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 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검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서 조례 제4조1항의 의결을 거친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제6조(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절차등) ①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

전도 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1인 이상의 자를 지정하여 안전도 검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군수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제3호서식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군수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7조(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등) ①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안전도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도조례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령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지체없이 안전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도조례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군수는 도조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등에 동 게시대를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9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옥외광고업의 신고)군수는 영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군수는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별표1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매년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을 받아야할 대상자
3. 교육실시방법·수강절차·비용
4. 기타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군수는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 하여야 하며, 교육 당일 참석여부를 확인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군수는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거나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⑥교육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전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불참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중일 때
3. 향토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12조(교육의 위탁) ①군수는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 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종사업자에 대한 교육실시자를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대표자 성명·주소·위탁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교육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11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당해년도 교육계획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 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교육비용을 부담시킬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교육실시 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등을 군수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2,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의 안전도 검사 수수료는 별표3,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는 별표4와 같으며, 수수료 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길이는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중 10원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수입증지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안전도 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도 검사 수수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 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5와 같다.

②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5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6과 같다.

②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이나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안전도검사 신청서가 접수된 것 또는 옥외광고업 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제1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와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업무는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위탁 시행할 수 있다.

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평창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2를 삭제한다.

【별지 1호서식】

옥외광고물등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① 번 호	광고주(옥외광고업자)						광고물등의 내용							관리자			18 변경사 항	19 비 고
	② 성 명	③ 주 민 등 록 번 호	④ 업 소 명	⑤ 전 화 번 호	⑥ 주 소	⑦ 옥 외 광 고 업 신 고 번 호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표 시 위 치	⑫ 표 시 기 간	⑬ 광 고 내 용	⑭ 준 공 일 자	⑮ 성 명	16 주 소	17 전 화 번 호		

364mm×257mm(보존용지(1종)70g/㎡)

【별지 2호서식】

제 호		처리기간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위탁지정신청서		30일	
신청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업 소 명 (단체명)		
	④ 주 소		
⑤ 영업장소재지			⑥ 전 화 번 호
<p>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40조 및 평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인)</p> <p>평창군수 귀하</p>			
구비서류 : 평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및 인력, 시설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1부		수 수 료 평창군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참조	

210mm×297mm(신문용지54g/㎡)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위탁지정서			
수 탁 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업 소 명 (단체명)		
	④ 주 소		
⑤ 영업장소재지			
⑥ 위 탁 기 간		20 ~ 20 (년 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40조 및 평창군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평 창 군 수 (인)			

210mm×297mm(신문용지54g/㎡)

【별지 제4호서식】

- 규 격 : 가로 6cm × 세로 8cm
- 바탕색 : 연 녹색
- 글 자 : 검 정 색

전 면

<p>옥외광고물 안전도 검 사 원 증</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px; height: 100px; margin: 10px auto; text-align: center;"><p>사 진 (3.5×4.5)</p></div> <p>평 창 군</p>

후 면

소 속 :
직 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자격기한 (20 ~ 20)
옥외광고물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평창군수 (인)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수료필증	
① 교육 과정명	
② 교육수료일자	
수 강 자	③ 성 명
	④ 소 속 업소명
<p style="text-align: center;">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42조 및 평창군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평 창 군 수(인)</p>	

210mm×297mm인쇄용지(특급)70g/㎡

【별지 제6호서식】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이수대장

① 연번	② 교육 과정명	③ 교육 수료일자	④ 소 속 업소명	⑤ 성 명	⑥ 주민등록 번호	비 고

210mm×297mm인쇄용지(특급)70g/㎡

【별표 1】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종류·내용 및 시간(제11조 관련)

종 류	교육 시간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비 고
신규교육	6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법규 -3시간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로법 등) ○ 표시에 관한사항 - 3시간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필요시 종업원도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업업자에 대한 교육이 없는 경우에는 광고업 신고 후 최초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함
행정처분에 의한 교육	3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법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로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보수교육	3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법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로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업자 (대표자) ※필요시 종업원도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법령의 제·개정시 실시
기타교육	별도 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여 공고함 		

【별표 2】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신고 수수료(제13조 관련)

가. 일반 옥외광고물

(단위: 원)

구분 광고물의 종류	단 위	기 준	음 · 면
1. 가로형 간판 가. 일반가로형간판 (나향외의 간판) 나. 건물 측·후면의 4층이상 판류이용 간판 (영 제15조 제4호)	개 개	· 6제곱미터 이하 · 6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20제곱미터 이하 · 2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2,000 1,000 24,000 2,000
2. 세로형간판	개	· 6제곱미터 이하 · 6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000 1,000
3. 돌출간판	개	· 3.5제곱미터 이하 · 3.5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이·미용업소 및 의료기관, 약국 표지등	10,000 500 3,000
4. 공연간판 가. 벽면이용간판 나. 지주이용간판	개 개	· 6제곱미터 이하 · 6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2,000 1,000 12,000 2,000
5. 옥상간판	개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0 4,000
6. 지주이용간판	개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2,000 2,000
7.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개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0,000 30,000 4,000 12,000 2,000

구 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음 . 면
8.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가. 일반공공시설물	개	· 1제곱미터 이하 · 1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2,000 1,000
나. 전주, 가로등주	개	· 10개이하 · 10개 초과시 5개당 가산	3,000 2,000
9. 교통시설(지하도) 이용 광고물	개	· 5제곱미터 이하 · 5제곱미터 초과시	4,500 5,000
10.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대		400,000
나. 비행기, 선박 양측면	대		10,000
다. 차량 양측면	대		2,000
11. 선전탑	개		3,000
12. 아취광고물	개		3,000
13. 창문이용광고물	개		3,000
14. 현수막 가. 현수막	개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1,000
나. 현수막 게시시설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5,000 1,000
15. 벽 보	매	· 50매당	2,500
16. 전 단	매	· 1000매당	2,500
17. 광고물등중 전기를 이용 하는 경우 (백열등이나 형광등을 이 용하여 단순 조명을 하는 광고물은 제외	개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	

나.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

(단위 : 원)

구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준	금 . 면
1. 시내, 시외, 전세 버스 외부광고	대		2,000
2. 영업용 화물자동차 외부 광고	대		1,500
3. 영업용 택시광고	대		1,000
4. 차량탑재 영상광고	대		350,000
5. 공중전화부스이용 광고	개	· 1제곱미터 이하 · 1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1,000
6. 축구 조형물 광고	개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2,000
			2,000
7. 홍보탑 광고	개		15,000
8. 벽면이용 광고	개	· 20제곱미터 이하 · 20제곱미터 초과시	24,000
			2,000
9. 깃발이용 광고	개	· 10개 이하 · 10개 초과시 5개당 가산	3,000
			2,000

※ 광고물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은 특별법에 의거 표시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일반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수수료를 적용한다.

다. 수수료의 징수방법

(1)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중 광고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영 제9조 제1항 관련)

- 광고물등의 규격 · 위치 · 장소변경은 수수료의 전액 적용

(2)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영 제9조 제3항 관련)

【별표 3】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수수료(제13조 관련)

(단위 : 원)

광고물등의 종류(게시시설포함)	적 용 기 준	수 수 료
1. 옥상간판	· 연면적 5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50제곱미터 이상 7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7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21,000 38,000 1,300
2.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돌출 간판	· 연면적 3.5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4,000 20,000 1,500
3. 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가로형 간판	· 연면적 6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6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4,000 20,000 800
4.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간판	· 연면적 1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4,000 20,000 800
5. 영 제23조제2항 및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4미터이상의 게시 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것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 1의 옥상간판에 준함 · 4의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6. 현수막 게시시설	· 연면적 30제곱미터 이상 4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4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1,000 600
7. 기타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 같은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별표 4】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제13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단 위	수수료	관 련 법 규	비 고
신 규	업소당	15,000	법 제17조제3항	
변 경	업소당	7,500	법 제17조제3항	

※ 옥외광고업의 변경신고 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영 제41조 제3항)

- (1) 관할 구역내에서 주소를 변경한 때
- (2) 업소명을 변경한 때

【별표5】

과태료 부과기준(제14조 제1항 관련)

위 반 사 항	과 태 료	읍·면
<p>1. 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한 자</p> <p>가. 입간판</p> <p>(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p> <p>(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p> <p>- 0.5제곱미터 이하</p> <p>- 0.6~0.8제곱미터 이하</p> <p>- 0.9~1.0제곱미터 미만</p> <p>(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p> <p>- 1.0~1.3제곱미터 이하</p> <p>- 1.4~1.6제곱미터 이하</p> <p>- 1.7~2.0제곱미터 미만</p> <p>(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p> <p>- 2.0~2.3제곱미터 이하</p> <p>- 2.4~2.6제곱미터 이하</p> <p>- 2.7~3.0제곱미터 미만</p> <p>(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p> <p>(2) 그 밖의 지역·장소에 설치 한 경우</p> <p>(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p> <p>- 0.5제곱미터 이하</p> <p>- 0.6~0.8제곱미터 이하</p> <p>- 0.9~1.0제곱미터 미만</p> <p>(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p> <p>- 1.0~1.3제곱미터 이하</p> <p>- 1.4~1.6제곱미터 이하</p> <p>- 1.7~2.0제곱미터 미만</p> <p>(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p> <p>- 2.0~2.3제곱미터 이하</p> <p>- 2.4~2.6제곱미터 이하</p> <p>- 2.7~3.0제곱미터 미만</p> <p>(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p>	<p>·5만원 이상 20만원 미만</p> <p>·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p> <p>·4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p> <p>·8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면적의 0.5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미만</p> <p>·3만원 이상 10만원 미만</p> <p>·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p> <p>·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p> <p>·5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면적의 0.5제곱미터당 5만원을 가산한 금액 미만</p>	<p>7만원 10만원 15만원</p> <p>20만원 25만원 35만원</p> <p>40만원 55만원 70만원 80만원 +10만원</p> <p>4만원 6만원 8만원</p> <p>10만원 15만원 25만원</p> <p>30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5만원</p>

위 반 사 항	과 태 료	금·면
나. 현수막		
(1) 벽면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5만원
- 1.1~2.0제곱미터 이하		7만원
- 2.1~3.0제곱미터 미만		8만원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5제곱미터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10만원
- 3.8~4.4제곱미터 이하		13만원
- 4.5~5.0제곱미터 미만		15만원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20만원
- 6.1~8.0제곱미터 이하		30만원
- 8.1~10.0제곱미터 미만		35만원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	50만원
	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	+10만원
	한 금액 미만	
(2) 지주·지정계시대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5만원
- 1.1~2.0제곱미터 이하		7만원
- 2.1~3.0제곱미터 미만		8만원
(나)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5제곱미터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10만원
- 3.8~4.4제곱미터 이하		13만원
- 4.5~5.0제곱미터 미만		15만원
(다)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20만원
- 6.1~8.0제곱미터 이하		30만원
- 8.1~10.0제곱미터 미만		35만원
(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	50만원
	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	+10만원
	한 금액 미만	
(3) 그밖의 종류의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5만원
- 1.1~2.0제곱미터 이하		7만원
- 2.1~3.0제곱미터 미만		8만원

위 반 사 항	과 태 료	읍·면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4.5~5.0제곱미터 미만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10만원 14만원 16만원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만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20만원 30만원 35만원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 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 한 금액 미만	50만원 +10만원
(4) (1)내지 (3)의 현수막을 설치 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초과	
다. 벽보	장당 5천원 이상 3만원 이하	
(1) 일반 광고내용		
- 1~10장이하		장당 10천원
- 11~20장이하		장당 13천원
- 21장이상		장당 20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 1~10장이하		장당 10천원
- 11~20장이하		장당 18천원
- 21장이상		장당 22천원
라. 전단	장당 3천원 이상 3만원 이하	
(1) 일반 광고내용		
- 1~10장이하		장당 5천원
- 11~20장이하		장당 8천원
- 21장이상		장당 10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 1~10장이하		장당 10천원
- 11~20장이하		장당 18천원
- 21장이상		장당 22천원
2.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		
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25만원
나. 연 2회 위반자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45만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50원 이상 100만원 이하	100만원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 (1) 과태료 산정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 (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시 소수점 2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최대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 (4) 입간판중 전기를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 등은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하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고물등은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만,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 (5) 최초 1년 이내에 반복·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별표6】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15조제1항관련)

위 반 사 항	이 행 강 제 금	군지역
1.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공연간판 가. 연면적 5제곱미터 미만 - 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이하 - 3.1~4.0제곱미터 이하 - 4.1~5.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7.0제곱미터 이하 - 7.1~8.0제곱미터 이하 - 8.1~9.0제곱미터 이하 - 9.1~10.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10.0~12.0제곱미터 이하 - 12.1~14.0제곱미터 이하 - 14.1~16.0제곱미터 이하 - 16.1~18.0제곱미터 이하 - 18.1~20.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에 2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미만	20만원 25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90만원 100만원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180만원 200만원 +10만원
2. 돌출간판 가. 연면적 5제곱미터 미만 - 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이하 - 3.1~4.0제곱미터 이하 - 4.1~5.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7.0제곱미터 이하 - 7.1~8.0제곱미터 이하 - 8.1~9.0제곱미터 이하 - 9.1~10.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10.0~12.0제곱미터 이하 - 12.1~14.0제곱미터 이하 - 14.1~16.0제곱미터 이하 - 16.1~18.0제곱미터 이하 - 18.1~20.0제곱미터 미만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만원 25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90만원 100만원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180만원

위 반 사 항	이 행 강 제 금	군지역
라.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	·200만원에 2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미만	200만원 +10만원
3. 지주이용 간판,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가.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 0.6~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30만원 33만원 38만원 45만원
나.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5제곱미터 이하 - 3.6~4.0제곱미터 이하 - 4.1~4.5제곱미터 이하 - 4.6~5.0제곱미터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50만원 60만원 80만원 90만원
다.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7.0제곱미터 이하 - 7.1~8.0제곱미터 이하 - 8.1~9.0제곱미터 이하 - 9.1~10.0제곱미터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00만원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180만원
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미만	200만원 +10만원
4.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건물4층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간판		
가. 연면적 5제곱미터 미만 - 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이하 - 3.1~4.0제곱미터 이하 - 4.1~5.0제곱미터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30만원 33만원 38만원 45만원
나.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7.0제곱미터 이하 - 7.1~8.0제곱미터 이하 - 8.1~9.0제곱미터 이하 - 9.1~10.0제곱미터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90만원

위 반 사 항	이 행 강 제 금	군지역
다.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10.0~12.0제곱미터 이하 - 12.1~14.0제곱미터 이하 - 14.1~16.0제곱미터 이하 - 16.1~18.0제곱미터 이하 - 18.1~20.0제곱미터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00만원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180만원
라.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미만 - 20.0~25.0제곱미터 이하 - 25.1~30.0제곱미터 이하 - 30.1~35.0제곱미터 이하 - 35.1~40.0제곱미터 이하 - 40.1~45.0제곱미터 이하 - 45.1~50.0제곱미터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200만원 230만원 240만원 250만원 260만원 280만원
마. 연면적 50제곱미터 이상	·300만원에 50제곱미터 초과면적 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 한 금액 미만	300만원 +10만원
5. 선전탑, 아취광고물,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가. 선전탑, 아취광고물 - 연면적 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6~1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1~1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6~2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21제곱미터 이상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60만원+ 1㎡당 5만원
나.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 애드벌룬(공) 2개 - 애드벌룬(공) 3개 이상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30만원 50만원 70만원+ 1개당 5만원
6.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가. 시계탑·조명탑·안내탑· 일기예보탑 - 연면적 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6~1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1~1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6~2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21제곱미터 이상	·30만원 이상 10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1㎡당 5만원
나. 교통안내소	·가로형간판에 준함	

위 반 사 항	이 행 강 제 금	군지역
다. 안내게시판·지정벽보판· 버스승강장·택시승강장· 관광안내도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라.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인정한 편의 시설물	·유사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마. 가목 내지 라목외의 공공 시설물 - 연면적 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6~1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1~1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6제곱미터 이상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20만원 25만원 30만원 31만원+ 1㎡당 5만원
7.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8.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유사한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	
가. 비행선		
(1) 무인 비행선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1제곱미터 이상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150만원 150만원+ 1㎡당10만원
(2) 유인 비행선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1제곱미터 이상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200만원 200만원+ 1㎡당10만원
나. 그밖의 교통수단		
(1)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10만원 20만원 29만원
(2)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4.0제곱미터 이하 - 4.1~5.0제곱미터 미만 (3)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에 5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5만원을 가산한 금액 미만	35만원 45만원 50만원 +5만원
9. 그밖의 유형의 광고물	·가로형간판에 준함.	

※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 (1) 이행강제금 산정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 (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시 소수점이하는 절사한다.
-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최대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중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 등은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하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고물 등은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만,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 이용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 (5)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직전안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V. 市·郡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표준안

현행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이 조례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p> <p>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한다)는 영 제7조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 하여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 록·관리하여야 한다.</p> <p>②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은 허가신청을 할 때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 다. 다만, 영 제 31조제3항·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을 사용하거 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조(목적)----- -----, 옥외광 고물등관리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시·도옥외광고물등관리 조례(이하 "시·도조례"라 한다)-----.</p> <p>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 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 다)은----- ----- ----- ----- ----- ----- ----- ----- ----- ----- ----- -----</p> <p><삭 제></p>

1. 옥상간판중 옥상바닥으로 부터
의 높이가 4미터미만인 불링핀 모
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
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간판

2. 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
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
적의 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돌
출간판

3.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
터 4미터미만인 지주이용간판

4.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과 지면
에 표시하는 높이 4미터미만인 애
드벌룬

5. 선전탑

6. 영 제4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비행선을 이용하는 광고물

7.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광고물관리심의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
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③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광
고물등중 현수막·벽보·전단의 경
우에는 검인 또는 압인, 천공을 함

<삭 제>

으로써 신고필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④시·도지사는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하게}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영 제9조제4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등중 시·도지사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을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과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제1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가로형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돌출간판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안보당정사 시23

<삭 제>

3. 영 제19조제2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 또는 높이
가 4미터미만인 불링핀 모형의 옥
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주이용간판

5.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
는 애드벌룬

6.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⑥ 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등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을 제외한 광
고물은 시·도지사에게 신고함으
로써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삭 제>

1. 당해 건물명,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
업내용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한 광고물

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중 네
온을 사용하거나 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
류 광고물

제3조(광고물등의 표시제한)①시·도 <삭 제>

지사는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표
시방법을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
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등을 고
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
법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과 같다.

1. 건물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의 총수량
2. 광고물등의 표시내용·종류·
색깔·규격 및 모양
3. 표시위치 또는 장소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
법

제4조(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영 제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광
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
음과 같다.

1. 연막이나 연기등 기체를 사용하
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2. 광선등을 벽면이나 공중에 투사
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3. 광고물등의 바탕색은 적색 또는
흑색인 원색의 사용을 2분의1 이
내로 하여야 한다.

제5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①영 제 <삭 제>

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간
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은 5층이
상의 건물이어야 한다.(광역시에만
해당)

②영 제19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간의 수평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미터이내 지역안에
옥상간판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인접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이하 “시·도” 라 한다)의 시·도지
사와 미리 협의하여 옥상간판간의 수
평거리 50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에드별론의 표시방법)①영 제 <삭 제>

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
중에 띄우는 에드별론간의 수평거
리는 1킬로미터이상으로 한다.

②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이내 지역안

에 지역안에 영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
룬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
접한 시·도의 시·도지사와의 미리
협의하여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 1
킬로미터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
룬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3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 <삭 제>

방법)①영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
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
다.

1. 버스·택시승강장, 노선버스안내
표지판, 휴지통, 벤취, 관광안내도,
지정벽보판, 현수막지정게시대
2. 기타 시·도지사가 특히 필요하
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공공시설물

②영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등주를 이용하는 광고물중 영
제26조제3항제1호·제4호 및 제5호
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시할 수 있

는 경우는 가로등의 기능을 보완하거나 도시경관의 훼손 및 도로교통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때에는 그 지역과 가로등주의 수량, 표시방법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영 제 <삭 제>

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로형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의 1층 출입구 양측에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의하여 영 제15조제3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건물의 정면이나 측·후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간판의 크기는 가로 3미터이내, 세로는 건물 높이의 2분의1이내이어야 한다.

2. 제1호의 본문 규정에 의한 판류
이용간판의 크기는 가로 60센티미
터이내, 세로 200센티미터이내이
어야 한다. 2이상의 간판을 연립
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는 또한
같다.

3. 벽면과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
로 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이
내이어야 한다.

제9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영 제30 <삭 제>

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전면폭
의 3분의1이내이어야 하고, 세로
크기는 건물높이의 4분의1이내이
어야 한다.

2. 벽면과 간판과의 간격은 40센티
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3. 공연중 또는 다음 공연의 내용
에 관하여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4.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통행
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

제10조(현수막의 표시방법)①영 제30 <삭 제>

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현수막은 벽면이용, 지정게시대이용, 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그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행사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바탕색은 3원색 및 흑색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된다.

3. 현수막의 규격은 게시시설 또는 지주의 규격을 따른다. 다만, 제4항제3호에 의한 단일형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경우에는 그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을 2미터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가로크기는 세로크기의 2분의1이내(좌우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지주부분을 제외한 각각의 현수막을 합한 전체의 가로길이는 또한 같다) 이어야 한다.

4.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5. 현수막(지정계시대 포함)을 표시하기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또는 영 제19조제1항제1호의 본문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내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의 건물 벽면에 영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후 설치한 게시시설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의한 게시시설의 길이는 당해 건물쪽(창문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5분의1이내, 세로의 길이는 건물의 높이가내로 표시하되, 게시시설의 상단은 건물의 상단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게시시설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게시시설은 당해 건물전체에 4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게시시설에는 하나의 현수막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가로는 10미터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고 재질은 스테인레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정게시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하나의 지정게시대에는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은 하나만 표시할 수 있다.

④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등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지주

는 단일형과 연립형으로 구분하며, 단일형은 하나의 지주에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2개의 현수막을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고, 연립형은 2이상의 지주를 사용하여 여러개의 현수막을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제3항에 의한 지정계시대와 유사한 형태의 것을 말한다.

2. 지주의 재질은 스테인레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주변경관 또는 건물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단일형지주는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공지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이내이어야 하고 하나의 건물에 하나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물에 입주한 업소수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에만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연면적 500제곱미터 초과시마다 1개씩(최대 4개이내)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4. 연립형지주는 당해 건물의 대지
안의 통행할 수 없는 공지에 설치
하여야 하며, 가로는 6미터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이내로
설치하여야 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소에 한하여 업소당
하나만을 설치할 수 있으며, 표시
할 수 있는 현수막의 수량은 3개
이내이어야 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모점포

나. 공중위생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국제회의
장, 종합휴양시설, 전문휴양시
설

라.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업소

제11조(벽보의 표시방법)영 제30조의 <삭 제>

2의 규정에 의하여 벽보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관에
부착하여야 한다.

2.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이내, 세
로 55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제12조(전단의 배부방법)영 제30조의

<삭 제>

2의 규정에 의하여 전단은 다음과 같이 배부하여야 한다.

1. 전단은 직접 나누어주거나 건물 출입구 등에 설치한 배부함을 통해 배부하여야 한다.
2. 전단의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이내, 세로 4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제13조(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의 표시

<삭 제>

방법)①영 제13조제9항 및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열차 또는 자동차의 외부에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자가가 소유하는 열차 또는 자동차의 외부의 창문부분을 제외한 좌·우 양측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2. 소유자의 성명·명칭·영업소명·전화번호·자기제품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표시면적은 각각측면(창문부분을 제외한다)면적의 4분의1이내이어야 한다.
4. 광고물에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영 제13조제9항 및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선(항공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무인비행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비행선의 좌·우 양측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2. 공중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주간(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에만 띄울 수 있고, 항공법의 관련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3. 시·도지사는 비행안전을 위하여 허가전에 신청인에게 비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비행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항공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밖에서 비행하고자 하는 비행선에 표시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도지사 및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허가를 한 경우에는 비행노선을 지정하고, 당해 시·도의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의 표시에 대하여는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삭 제>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창문이용광고물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 3층이하의 창문과 출입문에 표시하여야 하며, 창문에 표시할 경우에는 창문 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광고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2.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전화번호·영업내용 또는 상징형 도안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사용하는 색채는 건물과 조화되어야 한다.

제15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삭 제>

① 영 제31조제3항제6호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네온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운전자 또는 보행자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하며, 생활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네온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부를 판단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의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영 제3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 광고물의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의 시간당 표출비율은 25%이상으로 하며, 그 세부기준은 시·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출함에 있어 국정홍보, 관계법령 입법예고, 기타 일반 공익광고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도정 홍보내용은 시·도지사가, 시정·군정·구청 홍보내용은 자치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정하여 표출의뢰하는 사항을 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표시방법의 완화)영 제32조의 <삭 제>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p>1. 표시위치 또는 장소</p> <p>2. 광고물등의 규격·모양 또는 색깔</p> <p>3.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p>	
<p>제17조(위원회의 구성)영 제33조제2</p> <p>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위원은 다음의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 규정에 의한 공무원인 위원은 업무비중을 감안하여 당연적으로 정할 수 있다.</p> <p>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p> <p>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디자인 등을 전공한 학자 또는 전문가</p> <p>3. 기타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p>	<p>제3조(시·군·자치구위원회의 구성)</p> <p>①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자치구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p> <p>1. ----- -----</p> <p>2. ----- ----- 옥외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p> <p>3. ----- -----</p>
<p><신 설></p>	<p>②영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자치구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이하 “시·군·구소위원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p>

1. 시·군·구소위원회위원장은 시·군·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시·군·구소위원회는 시·군·구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3인 내지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은 시·군·구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과반수 미만이어야 한다.

3. 시·군·구소위원회의 위원은 시·군·구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시·군·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시·군·구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시·군·구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시·군·구소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영 제3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①영

제3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4조(시·군·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①-----시·군·구위원회의 -----

1.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 도시계획법상 미관지구안의 높이가 4미터이상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40제곱미터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평방미터이상으로써 네온을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도지사가 옥외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1. -----시·군·구위원회 회의 -----
2. 높이 4미터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3. ---- 20제곱미터이상의 ----
4. ----- 네온류를 -----
5. --- 시장·군수·구청장이----
6. 시·군·구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시·군·구위원회에서 시·군·구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안건
 나. 기타 시·도지사가 시·군·구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시·군·구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옥외광고관리업무 추진상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안건

<p>②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신 설></p>	<p>②시·군·구위원회 또는 시·군·구소위원회는-----</p> <p>-----</p> <p>-----</p> <p>③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등 시·군·구위원회 및 시·군·구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19조(안전도검사)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서에 의하여 실시하되 검사자는 확인 서명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p>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를 실시할 검사공무원을 그 소속하의 건축직·전기직·토목직 기타 관계공무원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p>	<p><삭 제></p>
<p>제20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①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p>	<p>제5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현행과 같음)</p>

1.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이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검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검사인력·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하되, 시·도지사는 그 인원 및 시설의 규모, 장비의 종류 및 수량을 별도로 정하여 제21조제2항에 의한 위탁계획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 1인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검사원

2. 사무실

<삭 제>

3.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및 기타 시·도지
사가 안전도검사에 필요하다고 인
정하여 지정하는 시설·장비

제21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등)

① 시·도지사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1인 이상의 자를
지정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
을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
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
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
지 제5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안전
도검사업무위탁지정신청서를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자
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
다.

제6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등)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조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③

제2호서식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호서식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시·도지사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2조(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①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안전도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령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지체없이 안전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⑦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호서식

제7조(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①-----

----- 시·도 조례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③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23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

 -----법령, 시·도조례 및-----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제8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조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등에 동 게시대를 위탁관리할 수 있다.

제9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제24조(옥외광고업의 신고)①시·도

지사는 영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
지 제8호서식에 의한 옥외광고업신
고(변경)대장에 의하여 이를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②옥외광고업자는 영 제41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신고필
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옥외광고업신고
필증재교부신청서를 시·도지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
광고업을 신고한 자가 휴업·재개
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업(휴업·재
개업·폐업)신고서를 작성, 옥외광
고업 신고필증을 첨부(재개업을 한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30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옥외광고업의 신고)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 의한 옥외광고
업자 관리대장에 -----

②-----

-----제5호서식-----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삭 제>

제25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①시·도지사는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별표1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육관리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류별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매년 3월말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당해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을 받아야할 대상자
3. 교육실시방법·수상절차·비용
4. 기타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시·도지사는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당일 참석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 <단서 삭제>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 1.~4. (현행과 같음)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④ 시·도지사는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거나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⑥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전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중일 때
3. 향토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호서식-----

-----제7호서식-----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⑥-----

-----제8호서식-----

-----법 제20조제2항-----

- 1.~4. (현행과 같음)

제26조(교육의 위탁)①시·도지사는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
의 임무·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
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
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도지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
육실시자를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
자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
탁받은 자의 명칭·대표자 성명·
주소·위탁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
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교육의 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5조제2
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
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의 위탁)①시장·군수 또

는 구청장은

제9호서식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호서식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이 시·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정하되, -----

④----- 제11조제
2항-----

----- 시장·군수·구청장-----

⑤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교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제2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도지사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영업정지등의 처분)①법 제14 <삭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의 처분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

⑤-----
-----제11조제4항-----
-----시-----

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은-----

⑥-----시장·군수·구청장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제2항제3호-----

-----시장·군수·구청장-----

<p>한 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옥외광고업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p>③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 정지 또는 폐쇄명령의 처분내용을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때에는 그 옥외광고업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업소명·처분내용 및 일자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p>	
<p>제28조(권한의 위임)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권한 중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6과 같다.</p> <p>②시·도지사는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p>	<p><삭 제></p>
<p>제29조(수수료)①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별표3,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의 안전도감사 수수료는 별표4,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 수수료는 별표5와 같으며, 수수료</p>	<p>제13조(수수료)①----- ----- -----별표2----- ----- -----별표3----- ----- -----별표4-----</p>

③ 시·도지사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 다.

<신 설>

제15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①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6과 같다.
②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방법등에 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관계법령 발췌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 제7조(허가 및 신고절차등) ①법 제 3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대상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며,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 조례가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색사진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도서의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등)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허가 또는 신고사항중 광고물의 규격·광고내용·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변경사항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등의 광고내용만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광고내용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또는 원색도안만을 첨부한다.
- 제33조제2항 위원은 관계공무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등 중에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반 수미만이어야 한다.
- 제33조제5항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인이상으로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33조제6항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설치·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 또는 시·군·자치구조례로 정한다.